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D/A 포페이팅)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앞

년 월 일

본인 _____ (인) 또는 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_____ (인) 또는 서명

주소

_____ 본인은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 이라 함)과 제1조에서 정한 ‘D/A 포페이팅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년 월 일에 약정한 외국환거래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조 (적용범위 및 절차)

이 약정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일로부터 180일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이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이하 “D/A 포페이팅 거래”라 한다)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 건에 대해 적용하되, 별도 “D/A 포페이팅 거래신청서”에 의해 본인이 의뢰하고, 은행이 신청서를 수용한 경우 본 약정서와 신청서에 규정된 조건들에 대해 본인과 은행 모두가 동의했다고 봅니다.

1.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제2조 (정의)

1. 이 약정에서 “D/A 포페이팅 거래”라 함은 은행이 본 약정서에 부합되게 수출채권을 매입한 거래를 말합니다.
2. 이 약정에서 “소구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함은 대금회수불능이 발생되더라도 본인의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진술 및 보장)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이 제출한 D/A 수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2. 본인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D/A 수출계약서 조건과 일치합니다.

3.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행한 수출환어음의 인수는 진정하고 유효합니다.
4. 본인은 수출환어음 및 D/A수출계약서 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배서를 포함한다)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은행이 수출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 하는데 국내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습니다.
5. 본인은 당해 'D/A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6. 본인이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이후에는 은행의 사전동의 없이는 결제기한 연장이나, 당해 'D/A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상과 어떠한 조건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7. 최근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D/A 포페이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습니다.(단, 수입자의 신용상태 등 'D/A 포페이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동 영향에도 불구하고 'D/A 포페이팅 거래'를 하기로 별도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소구 의무가 없는 경우)

본인은 수출환어음이 해외추심은행(수입상 거래은행)을 통하여 인수된 이후에는, 수출환어음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 하더라도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소구 의무가 있는 경우)

1. 은행은 해외 추심은행(수입상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이 수출환어음 인수를 확정하기 이전에는 본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집니다.
2. 수출환어음의 인수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① 적용대상 수출거래가 제1조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② 제3조에 따른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③ 본인의 귀책(선적서류 위조, 수입상과의 계약불이행 등)또는 수입국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④ 수입자가 물품 또는 상업송장을 인수하지 않거나, 항변 또는 상계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⑤ 국내은행이 해외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해외수입상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평가 서류에 대하여 본인이 진정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본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6조 (협조사항)

본인은 은행이 거래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입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이와 관련된 장표, 서류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매입대금상환면제수수료)

본인은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건별로 '매입대금상환면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매입대금상환면제수수료는 'D/A포페이팅 거래'에 따라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함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선적후,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의 기간	수수료율	비고
30일까지	연율(0.35%)	최저수수료 : 10,000원
30일 초과시	연율(0.25%)	

제8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등)

입금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은 '외국환거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9조 (적용기간)

이 추가약정의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이 해지일자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 2주일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10조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본인이 본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권)

본인과 은행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이 약정에서 전하지 않은 문제들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타 국제적인 규칙과 규정 및 은행의 관련 규정(통틀어 “규칙들”이라 함)을 따릅니다. 규칙들에서 정하지 않은 문제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결정됩니다.

1. 이 약정의 내용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 소재지 또는 본인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이 약정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혹은 외국환거래약정서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또는 서명
--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인)또는 서명
--	--	----------

